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 수요창출과 충전편의 개선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21.7.27)된 바, 구매목표대상기업 구체화 등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자 동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업의 정의 및 지원내용(제2조의2, 제17조의2)

- 1) 법에서 규정한 친환경차 부품기업, 충전시설기업 외에 구매목표 대상기업, 배터리리스기업 등을 추가
- 2) 친환경차로 사업전환, 친환경차 구매, 충전시설 구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대상기업 규정(제18조의4)

- 1) 법에서 규정한 ①공시대상기업집단, ②자동차대여사업자, ③일반택시운송사업자, ④여객운송사업자, ⑤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중 구매대상자를 구체화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 강화

(제18조의5제1항, 제2항, 제18조의6 제2항)

- 1) 의무대상을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변경하고, 공중이용시설 등은 총주차대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변경
- 2)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비용을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新築施設)은 5%, 법 시행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既築施設) 중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소유한 시설은 5%, 그 외 시설은 2%로 설정
- 3) 전용주차구역에 설치하여야하는 충전시설의 의무설치비용은 신축시설은 5%, 기축시설은 2%로 설정

라. 혁신도시 “인접지역”의 정의 및 수소충전소 규격(제18조의6제5항, 제6항)

- 1) 인접지역은 혁신도시 경계선에서 5km이내로 규정
- 2) 수소충전소는 시간당 25kg이상의 충전속도를 확보하도록 제시

마. 충전방해행위 현실화 (제18조의7제6호~제8호)

- 1) 급속·완속충전기의 충전구역에 주차만 하는 경우에도 장기간주차를 단속할 수 있도록 규정
- 2) 충전시설을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차(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것에 한한다)의 충전이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 신설

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의무개방하여야 하는 공공부문 범위를 규정(제18조의8제1항~제4항)

- 1) 법에서 규정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외에 정부출연연구소 등 개방의무 대상을 추가

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제18조의10, 제18조의11)

-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미설치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및 기준 등을 규정

아. 기축시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시한(부칙 제2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업) 법 제2조제10호 다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대상자
2. 수소연료전지, 수소가스내압용기 및 구동축전지(驅動蓄電池)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부품을 재활용하는 기업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수소연료전지 및 구동축전지 등의 시설대여업을 하는 기업
4. 제3호의 기업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수소연료전지 및 구동축전지 등의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한 기업
5.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한 사업재편계획을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승인받은 기업

제9조제1항 전단 중 “도지사 또는 ”을 “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한

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기술개발업무를 하는 사업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법 제8조의2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임차비용의 융자 또는 융자의 알선
2. 설비투자, 합병·분할합병, 영업양수, 지분인수 그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투자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의 알선
3. 제2조의2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기업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임차하거나 충전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경우 그 대출이자의 일부 보조
4. 환경친화적 자동차 부품을 제작·조립하는 기업 또는 제2조의2제5호에 따른 기업이 설비투자, 합병·분할합병, 영업양수, 지분인수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경우 그

대출이자의 일부 보조

5. 법 제10조의3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기업이 다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수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경우 그 대출이자의 일부 보조

②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신청서에 필요한 자금규모 및 그 산출근거가 명시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8조의7을 제18조의9로 하고, 제18조의4부터 제18조의6까지를 각각 제18조의5부터 제18조의7까지로 하며,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법 제10조의3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해당사업을 위하여 보유한 자동차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200대 이상인 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자로서 해당사업을 위하여 보유한 자동차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30,000대 이상인 자
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해당사업을 위하여 보유한 자동차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200대 이상인 자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
업을 하는 자로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
른 택배서비스사업을 등록한 자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
업을 하는 자로서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우수물류기업
의 인증을 받은 자

6.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
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제18조의5(중전의 제18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주차단위구획을 100개 이상 갖춘”을 “주차단위구
획 총 수(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주차장법」 제2조제
3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한다)인”으로, “특
별자치도”를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가목 중 “500세대”를 “100세대”로 하고, 같
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시·도지사, 특별자치도
지사, 특별자치시장”을 “시·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
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

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법률 제18323호 「환경친
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제18조의8제1항 각
호의 자가 소유 및 관리하는 시설: 대상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
의 5 이상

2. 제1호 이외의 시설: 대상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
은 경우

2. 그밖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주차단위
구획 수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제18조의6(중전의 제18조의5)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충전시설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외부 전기 공급
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것에 한한다. 이하 같

다)의 구동충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급속충전시설 및 완속충전
시설을 말한다.

제18조의6(충전의 제18조의5) 제2항 중 “제18조의4제1호 및 제2호에 따
른 시설에”를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로, “충전시설의 수량”을 “충
전시설의 수량은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법률 제18323호 「환경친화
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 이상으로 하되, 충전
시설의 수량 및 규격”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
치도”를 “시·도”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8조의5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충전시
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의6(충전의 제18조의5)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
항 및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이란 「혁
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⑥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수소전기자동차
에 수소를 시간 당 25kg 이상 충전할 수 있어야 한다.

제18조의7(충전의 제18조의6) 제1항 “법 제11조의2제5항”을 “법 제11조

의2제9항”으로 하고, 제1항제1호 중 “(이하 “충전구역”이라 한다) 내”를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충전시설을 갖춘 전용주차구역을 포함하며,
이하 “충전구역”이라 한다)내”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18조의5제1
항제1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을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를 “제18조의6제1항에 따른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환
경친화적 자동차가”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제18조의5제1항제2호”를
“제18조의6제1항”으로, “을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충전을 시작
한 이후”를 “의 충전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
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8조의6제1항의 충전시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 이외의 용
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8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8(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방) ① 법 제11조의2제11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4. 「공기업을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
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11항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방하지 아
니할 수 있다.

1.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시설 및 「보안
업무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보안시설

2. 해당 기관 이외의 자가 소유한 시설에 구축되거나 해당 기관 이외
의 자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충전
시설의 개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밖에 보안, 안전관리 또는 업무수행 등의 사유로 일반 공중이 출
입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1조의2제11항에 따라 충전시설을 개방하는 자는 이를 알리
는 표지를 외부에서 알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고, 개방하는 충전시설
의 위치와 개방시간, 이용조건·절차·방법 및 대가 등을 정보통신망
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정보를 통합관리하
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의9(충전의 제18조의7)제1항 중 “50”을 “80”으로 한다.

제18조의10 및 제18조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10(시정명령) 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의4제1

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
용주차구역의 설치 및 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
위 내에서 시정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기술적
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정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시정대상

2. 시정명령의 이유

3. 시정기한

4. 시정명령 불이행 시 처분 등에 관한 사항

제18조의11(이행강제금) ①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
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경
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산액

가. 설치기준에 맞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데 통상적으로 소요
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인건비 및 자재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
는 금액

나. 해당 관할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공영주차장의 월정기주차요금(시·도의 조례에서 이를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의 하한액에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 전용주차구역의 수와 위반기간(위반기간의 상한은 12월을 넘을 수 없다)을 곱한 금액

2.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경우: 설치기준에 맞는 충전시설을 설치하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명령의 이행을 위한 노력, 시정명령 불이행의 정도·사유 또는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제1호의 인건비, 자재비, 월정기주차요금 및 위반기간의 산정기준과 같은 항 제2호의 통상설치비용의 산정기준 그 밖에 이행강제금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 제1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나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시·도지사”를 각각 “부과권자”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부과권자는 아파트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수량이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등(「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5호의 입주자와 같은 조 제6호의 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수량과 동일하거나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1) 아파트 관리주체가 초과수량의 범위 내에서 전기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표시한 구역에 주차한 경우

2) 아파트 관리주체가 제18조의7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주차할 수 있다고 표시한 구역(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등의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수량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계속 주차한 경우

별표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이 영 제18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를 “법 제11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6조제1항”을 “제18조의7제1항제1호 및 법 제1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법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이 영 제18조의6제1항제2호에 따라”를 “법 제11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6조제1항”을 “제18조의7제1항제2호 및 법 제1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법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이 영 제18조의6제1항제3호에 따라”를 “법 제11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6조제1항”을 “제18조의7제1항제3호 및 법 제1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법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이 영 제18조의6제1항제4호에 따라”를 “법 제11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6조제1항”을 “제18조의7제1항제4호 및 법 제1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법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이 영 제18조의6제1항제5호에 따라”를 “법 제11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6조제1항”을 “제18조의7제1항제5호 및 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가. 법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별표 제2호사목 중 “법 제11조의2제5항”을 “법 제11조의2제9항”으로, “이 영 제18조의6제1항제6호에 따라 제18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을 이용하는”을 “제18조의6제1항에 따른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로, “충전을 시작한 이후 2시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을 “제18조의7제1항제6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6조제1항”을 “제18조의7제1항제6호 및 법 제1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아목 중 “법 제11조의2제5항”을 “법 제11조의2제9항”으로, “제18조의6제1항제7호에 따라 제18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을 “제18조의6제1항의”로, “을 이용하는”을 “의 충전구역에”로, “충전을 시작한 이후 14시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을 “제18조의7제1항제7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시간이 지난”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6조제1항”을 “제18조의7제1항제7호 및 법 제1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법 제11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제18조의6제1항의 충전시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제18조의7제1항제8호 및 법 제16조제1항	10만원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법률 제1832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수전설비(受電設備)의 설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기간을 시행일로부터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제18조의5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제18조의8제1항

각 호의 자가 소유 및 관리하는 시설: 시행일로부터 1년

나. 가목 이외의 시설: 시행일로부터 2년

2. 제18조의5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시행일로부터 3년

3. 제18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시행일로부터 1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2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업) 법 제2조제10호 다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대상자 2. 수소연료전지, 수소가스내압용기 및 구동축전지(驅動蓄電池)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부품을 재활용하는 기업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수소연료전지 및 구동축전지 등의 시설대여업을 하는 기업 4. 제3호의 기업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수소연료전지 및 구동축전지 등의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한 기업 5.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한 사업재편계획을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승인받은 기업

필요한 자금의 용자 또는 용자의 알선

3. 제2조의2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기업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임차하거나 충전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자금을 용자할 경우 그 대출이자의 일부 보조

4. 환경친화적 자동차 부품을 제작·조립하는 기업 또는 제2조의2제5호에 따른 기업이 설비투자, 합병·분할합병, 영업양수, 지분인수 그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용자할 경우 그 대출이자의 일부 보조

5. 법 제10조의3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기업이 다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수에 필요한 자금을 용자할 경우 그 대출이자의 일부 보조

②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신청서에 필요한 자금규모 및 그 산출근거가 명시된 사업계획서를 첨부

<신 설>

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8조의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법 제10조의3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해당사업을 위하여 보유한 자동차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200대 이상인 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자로서 해당사업을 위하여 보유한 자동차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3,000대 이상인 자

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해당사업을 위하여 보유한 자동차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200대 이상

	<u>인 자</u> 4. 「<u>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u>」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u>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u>」 제5조제1항에 따른 택배 서비스사업을 등록한 자 5. 「<u>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u>」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u>물류정책기본법</u>」 제38조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을 받은 자 6.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u>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u>」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급계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생 략) 2. 「<u>건축법 시행령</u>」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생 략) 3.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신 설>	차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한다)인 -----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 ----- ----- 가. 100세대 ----- 나. (현행과 같음) 3. <u>시·도지사</u>----- ----- ----- -- ②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법률 제18323호 「<u>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u>」 부칙 제2조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을
제18조의4(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 등)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100개 이상 갖춘 시설 중 전기자동차 보급현황·보	제18조의5(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 등) ① -----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주차단위구획 총 수(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주		

<신 설>

<신 설>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
관, 지방공기업 및 제18조의8
제1항 각 호의 자가 소유 및
관리하는 시설: 대상시설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2. 제1호 이외의 시설: 대상시설
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
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
역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

2. 그밖에 관할 시장·군수·구
청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
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
치하여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주차단위구획 수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제18조의5(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
량)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
른 충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
다.

1.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에 연결
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
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
브리드자동차의 전지를 충전
하는 시설로서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

2. 완속충전시설: 충전기에 연결
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전기

계산한다.

제18조의6(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
량)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
른 충전시설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
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
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
한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
서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
준에 적합한 급속충전시설 및
완속충전시설을 말한다.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

② 제18조의4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기자동차 보급현황·보급계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18조의4제3호에 따른 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법률 제1832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 이상으로 하되, 충전시설의 수량 및 규격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기자동차 보급현황·보급계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8조의5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삭 제>

총 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충전시설의 수량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 수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신 설>

<신 설>

제18조의6(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2제5항 후단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제2항-----

-----.

⑤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이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⑥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시간 당 25kg 이상 충전할 수 있어야 한다.

제18조의7(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2제9항-----

-----.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이하 “충전구역”이라 한다)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2. ~ 5. (생략)
6. 제18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을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2시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하는 행위
7. 제18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완속충전시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택규모와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을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충전을 시작한 이후 14시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1. -----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충전시설을 갖춘 전용주차구역을 포함하며, 이하 “충전구역”이라 한다)내-----

2. ~ 5. (현행과 같음)
6. 제18조의6제1항에 따른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

7. 제18조의6제1항-----

-----의 충전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

후에도 해당 충전구역에 계속 주차하는 행위

<신 설>

② (생략)

<신 설>

8. 제18조의6제1항의 충전시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현행과 같음)
- 제18조의8(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방) ① 법 제11조의2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4.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다른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 2제1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시설 및 「보안업무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보안시설

2. 해당 기관 이외의 자가 소유한 시설에 구축되거나 해당 기관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충전시설의 개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밖에 보안, 안전관리 또는 업무수행 등의 사유로 일반 공중이 출입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1조의2제11항에 따라 충전시설을 개방하는 자는 이를

알리는 표지를 외부에서 알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고, 개방하는 충전시설의 위치와 개방시간, 이용조건·절차·방법 및 대가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의7(국유재산의 임대료 경감) ① 법 제11조의3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료 경감률은 해당 국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② (생략)

<신설>

제18조의9(국유재산의 임대료 경감) ① -----

-- 80-----

-----.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의10(시정명령) 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신 설>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및 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시정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정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시정대상
2. 시정명령의 이유
3. 시정기한
4. 시정명령 불이행 시 처분 등에 관한 사항

제18조의11(이행강제금) ①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산액

가. 설치기준에 맞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인건비 및 자재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관할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공영주차장의 월정기주차요금(시·도의 조례에서 이를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의 하한액에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 전용주차구역의 수와 위반기간(위반기간의 상한은 12월을 넘을 수 없다.)을 곱한 금액

2.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경우: 설

치기준에 맞는 충전시설을 설치하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 명령의 이행을 위한 노력, 시정 명령 불이행의 정도·사유 또는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제1호의 인건비, 자재비, 월정기주차요금 및 위반기간의 산정기준과 같은 항 제2호의 통상설치비용의 산정기준 그 밖에 이행강제금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연 락 처	(044) 203 - 4322